## 교원인사관리규정

전문개정 2012.01.01. 제15차 개정 2016.08.19. 개정 2017.06.01. 개정 2019.08.28. 개정 2022.02.24.

### 제1장 총칙

- 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교법인 수원인제학원이 정한 바에 따라 수원여자대학교(이하 "본 대학"이라 한다)의 교원 임용, 신분보장, 복무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- 제2조(교원의 종류 및 직급) ① 교원은 전임교원, 비전임교원, 강사로 구분한다.

<개정 2019. 8. 28.>

- ②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, 부교수, 교수로 하고, 전임교원은 정년트랙과 비정년트랙 전임교원(이하 "계약제 전임교원"이라 한다)으로 구분한다. <개정 2012. 7. 22, 2014. 12. 1, 2016. 8. 19.>
- ③ 비전임교원은 초빙교원, 겸임교원, 명예교수, 객원교수, 비전임 산학협력중점교원 등특수목적성을 띠고 한시적으로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 <개정 2012. 9. 1, 2016. 8. 19, 2019. 8. 28.>
- ④ 강사는「고등교육법」 제14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을 말한다. <신설 2019. 8. 28.> 제3조(임용권) 교원의 임용 및 보직 임용권은 이사장에게 있다. 단, 총장은 법인의 위임을 받아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19.>
- **제4조**(임용요건) ① 본 대학이 임용하고자 하는 교원은 「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[별표 1] 및 본 대학 관련 규정에 따른 자격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19, 2019. 8. 28, 2022. 2. 24.>
  - ② 교원을 신규임용, 재임용, 승진 임용할 때에는 사전에 신원조사를 하여야 하며, 신원조사결과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.
  - ③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④ 임용을 위한 서류 및 전공(연구실적물) 심사지침은 [별지 제1호 서식]과 같다. <신설 2022. 2. 24.>
- 제5조(적용) ① 총장은 이 규정이 위임한 사항과 이 규정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세칙으로 정하여 적용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
②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학칙과 관계법규를 준용한다. <신설 2016. 8. 19.> [제39조제2항에서 이동<2016. 8. 19.>]

#### 제2장 교원인사위원회

- 제6조(교원인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) ① 법인정관 제6장제1절제3관제44조가 정하는 바에따라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(이하 "인사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②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<신설 2016. 8. 19.>
  - 1. 총장이 교원을 임용제청 하고자 할 때 임용제청 동의에 관한 사항
  - 2. 기타 총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
  - ③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16. 8. 19.>
- 제7조(인사위원회 구성) ① <삭제 2016. 8. 19.>
  - ② <삭제 2016. 8. 19.>
  - ③ <삭제 2016. 8. 19.>
- 제8조(운영세칙) <삭제 2016. 8. 19.>

## 제3장 교원의 신규 임용

**제9조**(임용시기) <삭제 2016. 8. 19.>

- 제10조(임용원칙) ① 교원의 임용은 공개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② 단,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책적 또는 시기적으로 일반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교육공무원법 제12조에 따라 특별채용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1. 본 대학 교육 발전을 위하여 학문적 업적이 탁월하거나 대학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초빙하고자 하는 경우
  - 2. 재직 교원이 파견·연수·정직·직위해제·면직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시급한 경우
  - 3. 기타 일반적인 공개채용의 절차를 따를 수 없는 경우 <신설 2016. 8. 19.>
  - ③ 신규교원의 세부 임용기준·절차·방법 등은 별도 세칙으로 정하여 시행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- **제11조**(전임교원의 신규임용 지원 자격) <삭제 2016. 8. 19.>
- **제12조**(신규임용 시의 전임교원 직급) ① 신임 전임교원의 직급은 조교수로 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②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총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거쳐 다른 직급으로 임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③ 타 대학에서 재직 중 퇴직한 교원을 신규 임용하는 경우 전직 대학에서의 직위보다 상위직에 임용하지 못한다.
- 제13조(임용기간) ①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되는 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.

<개정 2016. 8. 19.>

- ② 비전임교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에서 상호 계약에 의한다.
- 제14조(신규임용 비율) ① 겸임교원과 초빙교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규정 제6조제4항에 따라 계열별 법정교원 정원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임용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②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특정대학의 학사학위 소지자가 모집단위별 채용인원의 3분의 2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 단, 신규 채용된 교원이 당해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그 학사학위 전공분야가 본 대학에 채용되어 교육·연구할 전공분야와 다른 경우에는 그를 동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 산정하지 아니한다.

<개정 2016. 8. 19.>

③ 제2항은 매연도말을 기준으로 그 해까지의 누적 채용인원을 통산하여 적용하되, 연간 임용인원이 3명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
## 제4장 재임용

- 제15조(재임용 원칙) ①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하여는 교원평가 및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재임용한다.
  - ② 재임용 심사기준 및 세부 시행 절차 등의 내용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

<개정 2016. 8. 19.>

- ③ <삭제 2016. 8. 19.>
- 제16조(임용기간) <삭제 2016. 8. 19.>

제17조(임용 결격사유) <삭제 2016. 8. 19.>

# 제5장 승진 임용

- **제18조**(승진 원칙) ① 대학은 대학이 정한 승진자격과 기준을 충족한 전임교원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한다.
  - ② 총장은 승진 관련 모든 절차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한다.
  - ③ 교원승진심사는 인사위원회에서 진행한다. 단, 필요한 경우 총장은 승진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19.>
- ④ 승진 관련 자격기준 및 심의절차 등의 사항은 별도 세칙으로 정한다. <개정 2016. 8. 19.> **제19조**(승진 심사 대상 요건) <삭제 2016. 8. 19.>

제20조(승진 임용의 제한) <삭제 2016. 8. 19.>

#### 제5장의2 임용 결격사유 <신설 2016. 8. 19.>

제20조의2(임용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임교원으로 신규 임용, 재임용, 승진 임용될 수 없으며 당연 퇴직한다.

-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-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-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-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8. 질병으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
- 9. 임용 시 제출한 연구실적이 표절로 판명된 자
- 10. 본 대학 교수로서의 품위를 갖추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자

### 제6장 신분보장

- 제21조(휴직의 사유)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총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. 단, 총장은 본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, 제7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.
  - <개정 2016. 8. 19.>
  - 1.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
  - 2. 병역법의 규정에 따라 징집 또는 소집된 때
  - 3. 천재지변 또는 전시 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
  - 4.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 하게 된 때
  - 5.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<개정 2016. 8. 19.>
  - 6. 국제기구 외국기관 또는 국내·외의 대학·연구기관, 다른 국가기관, 재외교육기관(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)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<개정 2016. 8. 19.>
  - 7.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(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)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<개정 2016. 8. 19.>
  - 8.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<개정 2016. 8. 19.>
  - 9.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의 요양을 요하는 부모, 배우자, 자녀 또는 배우자 부모의 간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
  - 10.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
  - 11. 기타 법인정관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<신설 2016. 8. 19.>
  - ② <삭제 2016. 8. 19.>
- 제22조(휴직 기간) 전임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로 한다.
  - 2. 제21조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로 한다.
  - 3. 제21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월로 한다.

- 4. 제21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5. 제21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.
- 6. 제21조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, 해당 교원이 원하는 경우 이를 분할하여 휴직명령을 할 수 있다. 단, 여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그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19.>
- 7. 제21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.
- 8. 제21조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,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.
- 9. 제21조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,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. 단,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, 해외유학·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.
- 제23조(휴직기간 만료로 인한 면직) 휴직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총장의 허가 없이 복직하지 아니한 교원은 자동 면직된다.
- 제24조(휴직교원의 처우) ① 제21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휴직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휴직기간 중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. 단, 상급종합병원의 진단서 첨부 시에 한하며, 결핵성질환으로 인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의 8할을 지급하고 공무로 인한 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 중 봉급전액을 지급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② 제21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, 제6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휴직된 전임교원에 대하여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  - ③ 제21조 제5호 규정에 따라 휴직된 전임교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- 제25조(직위 해제 및 해임) ① <삭제 2016. 8. 19.>
  - ② <삭제 2016. 8. 19.>
  - ③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임용권자는 총장의 제청으로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19.>
  - 1.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,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<신설 2016. 8. 19.>
  - 2.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<신설 2016. 8. 19.>
  - 3.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(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.) <신설 2016. 8. 19.>
  -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8. 19.>
  - ⑤ 임용권자는 제3항제1호에 따라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동안 대기를 명한다. <신설 2016. 8. 19.>
  - ⑥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8. 19.>
  - ⑦ 제3항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. <신설 2016. 8. 19.>
- 제26조(의사에 반한 휴직, 면직 등의 금지) ① 교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.
  - ② 교원은 형의 선고, 징계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. 단, 대학

구조조정 및 학과의 개폐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
제27조(정년) <삭제 2014. 12. 1.>

## 제7장 복무

- 제28조(전임교원의 의무와 역할) <개정 2016. 8. 19.> ① 전임교원은 강의,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, 취업지도 및 상담, 현장실습지도, 위원회활동, 연구, 산업체 연수 및 교육활동, 보직수행 등 대학이 부여하는 역할과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.
  - ② 전임교원의 주당 책임시수는 12시간을 원칙으로 하되,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따로 정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③ 대학과 전임교원은 임용 및 재임용 시 당사자 간에 교육·학생지도, 연구, 산학협력 등해당 전담임무만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일반교원과 다른 시수를 적용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④ 위 제3항에 따라 신규임용 또는 재임용되는 교원은 재임용이나 승진과 관련하여 일반교원과는 달리 해당 직무와 관련된 별도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는다.
- 제29조(외부 겸직) ① 전임교원은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는 본 대학의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의 전임의 직을 겸임할 수 없다. 단,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다른 기관의 직을 위촉 받을 경우 총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.
- 제30조(연구 또는 연구학기) ① 전임교원의 연구성과를 높이거나 현장지식 및 기술 습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원에게 연구학기(년) 또는 연수학기(년)를 제공할 수 있다.

<개정 2016. 8. 19.>

- ② 교수 연구학기(년) 또는 연수학기(년)제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.
- 제31조(교원의 근대) ① 일반 전임교원은 주 5일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이를 이행하지 못하는 사유 발생 시 근대신청서를 제출하여 상급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.
  - ② 국내외 출장, 해외여행, 연수, 교육 등으로 인해 학교를 이탈하는 경우 신청서(또는 계획서)와 결과보고서(또는 도착보고서)를 제출하여야 한다.
  - ③ 전임교원의 근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직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- **제32조**(징계)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임교원은 징계 심의를 거쳐 징계를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1. 사립학교법, 교육관계법령, 법인정관, 기타 본 대학 제 규정을 위반하여 교원의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
  - 2. 직무상의 의무 불이행, 위반,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
  - 3. 기타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<개정 2016. 8. 19.>
  - ② 징계와 관련한 절차와 처분에 대해서는 법인정관에 의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
## 제8장 급여

**제33조**(급여) 교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별도로 정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
#### 제9장 인사기록

- **제34조**(인사기록) 총무팀은 교원의 인사에 관한 일체의 기록을 관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- 제35조(서류보관) 총무팀은 다음 각 호의 인사 서류를 비치·보관하여야 한다.
  - <개정 2016. 8. 19.>
  - 1. 임용에 관한 서류
  - 2. 발령 대장
  - 3. 포상에 관한 서류
  - 4. 징계에 관한 서류
  - 5. 교육 훈련에 관한 서류
  - 6. 인사 통계에 관한 서류
  - 7. 기타 인사 관련 서류 <개정 2016. 8. 19.>
- 제35조의2(인사기록의 전자정보관리) 임용권자는 제35조에도 불구하고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을 전자적 기록 장치를 이용한 정보시스템에 작성·유지·보관할 수 있다. <신설 2016. 8. 19.>

### 제10장 정년보장교원 임용 <신설 2014. 12. 1.><개정 2016. 8. 19.>

- 제36조(정년보장교원 임용) ①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로 한다.
  - ② 대학은 법인정관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정년보장을 심사하여 승인할 수 있다.
  - ③ 교원의 정년보장에 관한 기준과 심의절차는 별도의 세칙에 따른다.
- 제37조(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) ① 정년보장 대상 교원을 심사평정하기 위하여 정년보장교원임용심사위원회(이하 본 조에서는 "위원회"라 한다)를 둔다.
  - ② <삭제 2016. 8. 19.>
  - ③ <삭제 2016. 8. 19.>
  - ④ <삭제 2016. 8. 19.>
  - ⑤ 기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. <신설 2016. 8. 19.>
- 제38조(정년보장교원의 의무) ① 정년보장교원으로 임용된 교원은 매년 성과평가에 활용되는 교원업적 평가결과가 "B"등급 이상이어야 하며,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조치를 받는다. 단, 보직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1. 교원업적 평가결과가 "C"등급인 경우 당해 연도 성과급에서 교원업적평가 반영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50%를 삭감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2 교원업적 평가결과가 "D"등급인 경우 당해 연도 성과급에서 교원업적평가 반영비율에

해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
- 3. 교원업적 평가결과가 정년보장기간 내 2회 "C"등급 이하인 경우 1년간 연수 및 연구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4. 교원업적 평가결과가 정년보장기간 내 3회 "C"등급 이하인 경우 2년간 연수 및 연구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.
- ② 정년보장교원이 6월 이상의 공무에 의한 출장, 연수 등의 사유로 인해 정상적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교원업적평가대상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총장이 정하는 평가등급을 적용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- ③ <삭제 2016. 8. 19.>
- ④ <삭제 2016. 8. 19.>

제39조(기타) ① <삭제 2016. 8. 19.>

② <삭제 2016. 8. 19.>[제5조제2항으로 이동<2016. 8. 19.>]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전면개정)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임용된 교원 중 2012. 7. 22. 현재 전임강사로 재직중인 자의 직명은 2012. 7. 22. 부로 조교수로 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- 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정년보장교수로 임용된 교원의 정년보장교원 의무 적용은 정년보장임용과 동시에 적용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22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교원의 자격 기준 <개정 2016. 8. 19, 2022. 2. 24.>

학력 연구・교육	대학졸	:업자 ·동등자격	자	전문대학졸업자 · 동등자격자		
경력연수 직명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	연구실적연수	교육경력연수	계
교수	4	6	10	5	8	13
부 교 수	3	4	7	4	6	10
조 교 수	2	2	4	3	4	7
강사	1	1	2	1	2	3

- [비고] 1. 이 표 중 대학은 사범대학, 교육대학을 전문대학은 방송통신대학(전문대학졸업학력이 인정되는 과정을 말한다) 및 종전의 교육대학, 초급대학, 전문학교, 실업고등전문학교를 포함한다.
  - 2. 연구실적이라 함은 [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] 제3조에 따라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하여 대학 기타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실적, 산업체에서 교원이 담당하는 학과목과 관련되는 직무에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.
  - 3. 연구실적연수와 교육경력연수는 서로 대치할 수 있다.
  - 4. <삭제 2022. 2. 24.>
  - 5. <삭제 2022. 2. 24.>

【별표 2】신규 교원채용서류 <삭제 2022. 2. 24.>

【별지 제1호 서식】서류 및 전공(연구실적물) 심사지침 <개정 2022. 2. 24.>

#### ◎ 서류평가기준

- 1. 증빙자료(경력 및 재적증명서 등)가 첨부된 것에 한하여 평가한다.
- 2. 초빙전공 분야와 대학 및 대학원의 전공 동일여부를 심사한다.
- 3. 대학과 대학원의 전공이 다를 경우 대학에서 전공한 과목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학원에서의 전공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야의 산업체 근무경력 또는 기타연구 및 교육경력 등이 교원자격기준에 충족하다고 인정되어야 한다.

#### ● 전공평가기준 [공통사항]

- 1. 연구실적물 (신규임용, 재임용, 승진임용)
- 가. 임용하고자 하는 전공영역의 연구실적물을 평가대상으로 하되, 제출된 연구실적물 전체가 전공영역이 아닐 경우에는 평가하지 아니한다.
- 나. 연구실적물은 신규 임용의 경우 학위논문을 포함하여 공고일이 속한 월 기준 4년 이내의 연구실적 만을 인정하며,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에는 현직급 임용기간 내 발표한 연구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한다.
- 다. 연구실적물은 다음과 같이 발표된 것이어야 하며, 일간지 및 교내 신문 등에 발표된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.

#### 1) 저서

- ① 출판된 것에 한하며, 출판 전인 경우 해당 출판예정확인서를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전공과 관련하여 저자의 이론을 정리·체계화한 저서 또는 창작물만 연구실적물로 인정한다.
- ③ 연속된 저서(상·하권, 1·2권 등)는 각 권으로 인정하되, ISBN 일련번호가 동일한 것은 1권으로 인정한다.
- ④ 전문대학 교재로서 새로이 편찬·정리한 교재도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
- ⑤ 교재의 경우 대학에서 주교재로 사용이 되었거나 사용 중인 것만을 인정한다.
- ⑥ 중·고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는 인정하되 강의용 자료와 참고서 등은 연구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.

#### 2) 논문

- ① 한국연구재단에 등재 및 등재후보 학회지, 단 비등재(후보) 논문인 경우는 적용비율을 달리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8. 19.>
- ② 논문집(단,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, 대학 내 연구소 논문집은 제외한다.)
- ③ 연구자의 전공분야와 다르더라도 승진 시에는 아래 논문(i~iv) 또는 연구보고서(v)를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. <개정 2016. 8. 19.>
  - i. 전문대학 교육제도
  - ii. 직업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
  - iii. 산학협동(산업체 현장문제, 학생현장실습 등)에 관한 연구
  - iv. 학생 생활지도 및 취업지도에 관한 연구
  - v. 정부 또는 정부 산하 연구기관의 연구보고서
- ④ 예·체능계에 있어서는 연기, 연주, 발표, 전시, 창작, 출품, 입상 등을 말하는 것으로,

예·체능 및 창작실기 분야에 대한 연구실적 심사기준은 아래 교수자격인정심사준칙에 의하되, 평점 1점은 연구실적 100%로 인정한다.

연구실적	평점
1. 미술	
가. 국제전, 미술대전, 상공전	
· 입선 1회	0.5~1점
· 특선 이상 1회	1~2점
·국제전 출품 1회	0.5점
나. 지역규모 공모전	
· 특선 이상 2회	1점
· 입선 4회	1점
다. 공인된 개인전	
· 개인전 1회	1점
· 2인전 1회	0.5점
·기획전 1회	0.5점
라. 공인된 단체전의 회원전 및 공모전	
· 입선 1회	0.25~0.3점
· 특선이상 1회	0.5~1점
마. 공인된 국내외 초대전	
· 출품 1회	0.7~1점
바. 국제전 심사위원 1회	0.5~1점
사. 미술대전 등 심사위원	
·미술대전, 산업디자인전 심사위원 1회	1점
· 공인된 공모전 심사위원 1회	0.5점
·시·도 단위 미술 전람회 심사위원 1회	0.25~0.5점
2. 음악	
가. 국내외에서 인정된 독창회, 독주회, 개인작곡발표회 : 1회	1점
나. 국·내외에서 인정된 협연 및 전문연주단체에 의한 창작품 초연 1회	0.7점
다. 인정된 발표회의 3중창 이상, 3중주 이상, 단독음악회 및 3인 이상 작품발표회 및 반주 1회	0.5점
라. 인정된 종합연주회 등	
· 인정된 종합연주회 중주 및 반주 3회	0.3점
· 협주곡 협연, 오페라 주역 1회	1점
3. 체육	
가. 공인된 체육단체에서 개인 연구발표회 : 1회	1점
나. 올림픽 경기출신	1점
다. 전국대회 입상 : 2회	1점
라. 국제공인 심판자격 : 1회	1점
마.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구회 강사 50시간	1점
4. 창작실기 활동	
가.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특선 1회	1점
나. 전국을 단위로 한 공인된 각종 발표회에서 입선 2회	1점
5. 학·예술관계 및 창작실기 활동분야의 훈장 1회	2점

라. 연구실적물의 인정환산율은 다음과 같다.

1) 1인 연구 또는 편찬: 100% 인정 2) 2인 연구 또는 편찬: 70% 인정 3) 3인 연구 또는 편찬: 50% 인정

4) 4인 이상 공동연구 또는 편찬 : 30% 인정

5) 석사학위취득논문 : 100% 인정6) 박사학위취득논문 : 200% 인정

(단, 석사 및 박사학위 취득논문을 학술지에 공동으로 게재한 경우, 학위 취득자에게만 인정환산율을 적용한다. 인정환산율은 2) 논문의 "라"를 따른다.) <개정 2010. 1. 1.>

- 2. 연구실적물(재임용, 승진임용)
- 가. 연구실적물의 질에 대하여는 발표지의 권위 및 내용의 질적 수준 등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. 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, 학술연구재단 등재지, 등재 후보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실적심사보고서는 생략하고 연구실적심사조서만 제출한다.
  - <개정 2016. 8. 19.>
- 나. 재임용 및 승진임용 시 연구실적물은 각 편당 해당 전공분야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연구실적심사를 받아 연구실적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다. 해당 심사위원은 심사대상자보다 상위직(교수는 동급)이어야 하며, 심사위원은 교내인사 2인과 교외인사 1인으로 하되, 교내에 해당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전공자가 없을 경우는 교외인사로 심사위원을 대체한다.
- 라. 산학협력활동의 연구실적물 대체 비율 <신설 2017. 6. 1.><개정 2022. 2. 24.>
  - 1) 산학협력 활동의 연구실적물 대체비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.
- ※ 평가기간 내 모든 분야 합계 최대반영 비율: 연구실적 인정비율(200%) 중 50% 대체 가능

구분	세부분류							최대 인정 비율1)		
산학연 연구비 . 및 사업비 : 수혜	구분	1,000만원이상 3,000만원미만	3000만원이상 6000만원미만	6,000만원이상 9,000만원미만	9,000만원이상 15,000만원미만	15,000만원 이상	-			
	비율	5%	10%	15%	20%	25%	-			
	- 인정비율 : 1/n (공동연구원(n)) - 참여교원 5인 이상일 경우 5인으로 산정							50%		
기술	구분			6,000만원이상 9,000만원미만	9,000만원이상 15,000만원미만	15,000만원 이상	-			
이전	단독	5%	10%	15%	20%	25%	-			
수익금	- 인정비율 : 1/n (공동연구원(n)) - 참여교원 5인 이상일 경우 5인으로 산정							50%		
	(1)발명특허(국외)					25%	50%			
특허/실· 용신안	(2)발명특허(국내)						15%	25%		
	(3)실용신안 및 의장						10%	25%		
	(4)디자인 출원					5%	20%			
산업체 연수	(1) 5일(1일 8시간) 이상의 산업체 연수 결과물 (전체교수 발표 및 연구실적으로 인정할 수 결과물에 한하여 인정)							25%		
창업 실적	(1) 실험실 공장 창업실적 (사업자등록증 제출)					25%	50%			
	(2) 실험실 공장 창업실적 - 매출실적 : 산학연 연구비 및 사업비 수혜율 구분 적용							-		
상위자 격취득	(1)기술사 이상(1건)							25%		
* 연구실적	* 연구실적 200% 중 50%(200*1/4)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음 (재임용,승진 시 적용)									

1) 최대인정비율 예시 (국외발명특허 3건의 경우 25%\*3=75% 이나 인정은 최대 50%임)

- ① 매년 신청기간에, 그해 산학협력활동으로 제출된 실적물에 한하여 연 1회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
  - 차기년도 소급 적용 불가
  - 당해연도 관련 실적 부분에 관하여 당해연도 이의 신청 가능
  - 도표상의 모든 배점(논문실적 비율과 같은 의미)은 연단위

【별지 제2호 서식】가. 기초 및 전공심사기준(전임) <삭제 2022. 2. 24.>

【별지 제3호 서식】나. 기초 및 전공심사기준 (초빙/겸임) <삭제 2022. 2. 24.>

【별지 제4호 서식】시범강의 평가기준 <삭제 2022. 2. 24.>

【별지 제5호 서식】면접심사 평가기준 <삭제 2022. 2. 24.>